

이용계약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 2)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본인부담금, 급여제공 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 계약서 부분 1부를 제공 한다.
- 3) 계약체결 시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비상 연락망,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 한다.
- 4)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한다.
- 5) 계약이 체결 후 변경된 경우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욕구사정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수급자별 급여제공 계획을 세워 그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을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12.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 한다.

3.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 표에 따른다.
-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84,670		76,340		47,670			

3)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는다.
- ② 대상자의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아래 표에 따라 적용하며, 재가급여 월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③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 경감(9%),			
	일반수급자		15% 부담			

4) 본인부담금 납입

- ①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5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고지한다.
- ②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기관에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자동이체 및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할 수 있다.
※ 계좌 번호 : 우리은행 1002-634-778495 예금주 : 이병숙
-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여 전달한다.
-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5.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및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④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해제절차 및 기한

-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 ②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